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8월 31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8월 31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9월 9일

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해 권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규정한 4-H 활동지원 기금운영조례의 일몰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구미시 4-H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지속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기금의 일몰기간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2조)
 - 현행 : 존속기한 2015년 12월 31일
 - 수정 : 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 「한국4-H활동 지원법」 제5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

○ 기 타 : 해당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최 명 호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규정한 4-H활동지원 기금운영조례의 일몰기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청소년들의 인격도야와 창조적 미래세대의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법령에 따라 규정한 조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로 수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08.03.22. 시행)에 의거 우리시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기금의 일몰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